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2025. 3.



창업진흥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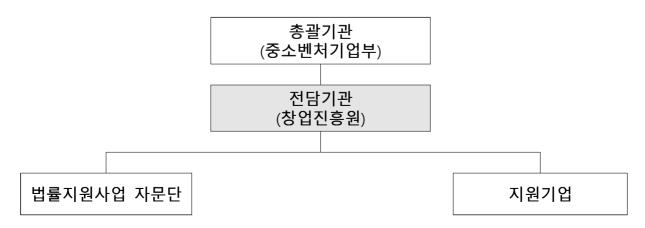
제1	· 장 총칙 ·································	1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추진체계)	
	제5조(총괄기관 역할)	
	제6조(전담기관 역할)	
	제7조(평가위원회)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제9조(준수사항)	
제2	2장 사업운영	3
	제10조(신청 및 접수)	
	제11조(지원제한)	
	제12조(자문단 매칭)	
	제13조(약정의 체결)	
	제14조(지원범위)	
	제15조(지원내용)	
	제16조(약정해지 등)	
	제17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제18조(점검·평가)	
1) o		_
제3	3장 전문가 모집 및 제한 ··································	6
	제19조(전문가 구성 등)	
	제20조(자문단 운영기간 등)	
	제21조(자문료 지급)	
	제22조(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부 칙	ヮ
	7 7	/

1.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지원기업]	
[별지 제01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신청서	9
[별지 제02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별지 제03호] 법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11
[지원기업·자문단] [별지 제04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제05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	13 19
[자문단]	
[별지 제06호] 법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0
[별지 제0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2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스타트업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사업"이라 한다) 사업 관리 지침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총괄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 2. "전담기관"이란 총괄기관이 법률지원사업 운영을 위탁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 3. "자문단"란 법률지원사업에 활동하기 위해 선정된 변호사를 말한다.
 - 4. "스타트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 5. "지원기업"이란 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말한다.
 - 6. "평가위원회"란 자문단의 선정, 평가 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7. "사업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7. "자문 의견서"란 자문단이 지원기업에게 자문한 내용, 자문시간 등을 기재하고, 지원기업의 서명을 받아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본 관리지침은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추진체계) 법률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총괄기관 역할) 총괄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2. 기타 법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기관 역할)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 사업추진 결과의 보고
- 3. 법률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자문단 평가 및 자문료 등의 지급
- 4. 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 5. 법률지원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 6. 기타 법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기관과 협의한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자문단 선정·평가
- 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5인 이상(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자문단 및 지원기업의 제재 및 환수, 참여제한 등 심의
- 2. 자문단이 제출한 자문의견서의 적정성 심의
- 3.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5인이상(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담기관에서 안내하는 지원절차 및 일정의 준수
- 2. 자문단의 업무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 3. 전담기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 4. 법률지원사업 공고, 관리지침 등의 숙지와 준수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담기관에서 안내하는 지원절차 및 일정 따른 자문수행
- 2. 지원기업의 업무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 3. 전담기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 4. 법률지원사업 공고, 관리지침 등의 숙지와 준수

제2장 사업 운영

-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법률지원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지원사업 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 3. 사업자등록증
 -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법률지원 사업 지원이 불가하거나 전담기관에 의해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2. 당해 연도 지원한도 초과 기업
 - 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법률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한 기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총괄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이 전담기관에 해당 지원기업의 지원을 안내하고, 전담기관은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단 매칭) ①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자문을 받고자 선택한 자문단에게 자문 수락 여부를 문의하고, 해당 자문단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후 2일 이내 자문 수락 여부를 전담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이 자문을 수락한 경우 전담기관은 지원기업 및 자문단에게 매칭 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요청할 경우 지원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업에게 자문단을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약정의 체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수락한 자문단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매칭 확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기업에게 법률지원사업 자문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법률지원사업 자문약정서 및 비밀유지 협약서(별지 제4호)를 검토하여 3일 이내에 자문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기업과 자문단은 서류 검토 등 약정 체결에 필요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예시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지원기업과 자문단은 약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분쟁이나이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자문단은 지원기업과의 자문약정에 따른 법률자문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 ⑥ 지원기업은 약정체결 전 1회에 한하여 자문단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범위) 법률지원사업의 자문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업무분야	서비스 내용
	계약법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 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심화	지식재산권(IP) 보호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규제 준수 등	법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법규제 문제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등
	노동법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일반	투자 및 자금 조달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기업법무 및 기타	창업기업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하며, 그 외 지원기업이 기업경영 및 고객관리 등에 필요한 법률 검토사항

제15조(지원내용) ① 자문료는 지원기업 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자문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업무 분야	분야별 지원한도 (만원)	기업당 지원한도 (만원)
심화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250	200
일반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100	300

- ② 자문단은 자문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별지 제5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검토 등 자문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원기업이나 자문단이 요청한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법률 자문에 관한 내용을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원기업은 자문의견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보완요청을 진행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자문단은 자문완료 후 정산을 위해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별지 제5호)"에 지원기업의 확인을 받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약정해지 등) ① 지원기업과 자문단 양 당사자는 약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약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기업 또는 자문단에 대해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지원기업과 자문단은 제13조 제1항과 같이 지원기업 자문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점검·평가) ①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자문단이 제출한 자문의견서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사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에게 법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문단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으로부터 자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총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전문가 모집 및 제한

- 제19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총괄기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제14조에 따른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수임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법률지원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문단 운영기간 등) ① 자문단의 운영기간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으로 하되, 공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를 자문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자문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기업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단이 자문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 3. 자문단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법률지원사업 자문단에서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 4.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로 더 이상 법률지원사업 자문단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자문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지원기업이 3개사 이상인 경우
 - 6. 그 외 자문단으로서의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③ 제2항제3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자문단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자문료 지급) ① 전담기관은 자문단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자문이 종료된 건에 한하여 자문단의 자문료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문료는 자문단 기타소득 등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 후 지급한다.
 - ④ 자문료는 자문단 명의의 지정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 제22조(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① 전담기관은 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기업 또는 자문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제한(1년) 및 자문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지원기업의 불만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고 사실확인 결과 귀책사유가 있는 자문단
 - 2. 3회 이상 관련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문단
 - 3. 3회 이상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전담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자문단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합산하여 3회 이상 적발된 자문단
 - 5.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원기업
 - 6.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지원기업 또는 자문단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2025년 3월 4일>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제출서식

1.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지원기업]

[별지	제01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신청서	필수(지원전)
[별지	제02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지원전)
[별지	제03호]	법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수(지원후)

[지원기업·자문단]

[별지 제04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필수(매칭후) [별지 제05호]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 필수(매칭후)

[전문가]

[별지	제06호]	법률지원사업	참여 신청	!서	••••••	해당시
[별지	제07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의서 ········	•••••	해당시

법률지원사업 자문신청서(지원기업용)

■ 기업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성 명	부 서
담당자 정보	직급(책)	유 선
	휴대전화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 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	
종업원 수		매출액(직전년도)
설립일자		
주 소		

= ~16 = 0 = 0		자문	희	망니	내용
----------------------	--	----	---	----	----

■ 첨부서류

-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2)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업진흥원장 귀중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지원기업용)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 창업진흥원)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 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문단(변호사 등), 법률자문 플랫폼 기업(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체결사)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원활한 법률자문 진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됩니다.
- □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 정보 : 담당자성명, 직급, 부서,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 메일주소, K-STARTUP 가입정보) 등
- 기업 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
- 고유식별 정보 : 대표자 또는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 □ 보유 이용기간
 - 해당 개인 및 기업정보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활동 관련 목적으로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 이용하며 개인 또는 기업의 삭제요청 또는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식별정보	필수항목(성명, 소속,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20 일 녆 월

기업명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창업진흥원장 귀중

법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지원기업용)

기업명		자문기간	20 ~ 20
담당자		연락처	
설문일자	20	자문단	

<참여 성과>

1. 법률지원사업이 귀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1-1. (1번에 대한 4). ⑤ 답변 시) 법률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2. 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는 적절하였습니까?

①매 우적절 ②적절 ③보통 ④부적절 ⑤매우 부적절

3 법률지원사업이 지원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않다

4 귀사가 수행한 자문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

)

<전문가 평가>

5. 귀사의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는 몇점입니까?

구분	질의내용	배점	점수
1	법률 자문이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	자문 분야에 대한 자문단의 전문성 은 어떠합니까?	20	
3	자문단은 정확한 자문을 위해 충분히 소통 하였습니까?	15	
4	자문단은 귀사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 하였습니까?	15	
5	자문 결과가 활용에 적합하도록 현실성이 있게 도출 되었습니까?	15	
6	자문단은 적절한 기간 내 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까?	15	
	총계	100	

5-	-1.	(만족	투도	70점	미만	시)	전문	가	만족되	카	낮은	이유는	무	것입니기	가?		
6.	사	업의	개선	선사항	이나	문제	점 등	⋚ :	의견을	자위	유롭게	기술히	라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별지 4 법률지원사업 자문약정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자 문

에 관한 건

지원기업 기업명:

대표자 :

자문단 : (예시 : "법무법인 □□□ 변호사 ◇◇◇")

_____(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은 _____(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하 "법률지원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률자문을 위임하고, 지원기업과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본 약정서에서 '법률자문'이라 함은 자문단이 지원기업을 위하여 자문 요청 건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 문제 해결 전략, 서식·서면(법원, 행정기관, 그 외 민간기관이 사전에 일정한 양식 또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기업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법률 절차에 대한 안내, 그 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 법률 사무 등 (이하 "법률자문"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① 자문단은 본 약정에 의거, 지원기업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 ② 자문단은 지원기업과의 상담 및 법률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기업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① 지원기업은 자문단이 법률자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제출하고, 자문단의 질문이나 조회에 대하여는 즉시 이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업은 자문단이 전담기관에 자문료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본 약정을 체결한 후 지원기업과 자문단은 본 약정서 사본과 비밀 유지협약서를 창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 제5조 ① 자문수행 후 자문단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과 전담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후 자문료를 지급 받는다.
 - ② 전담기관은 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기업 및 자문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참여제한(1년) 및 자문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원기업의 불만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고 사실확인 결과 귀책 사유가 있는 자문단
 - 2. 3회 이상 관련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문단
 - 3. 3회 이상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전담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자문단
 -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가 합산하여 3회 이상 적발된 자문단
 - 5. 법률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원기업
 - 6. 법률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지원기업 또는 자문단
- 제6조 본 약정은 법률자문이 그 목적을 달성한 때 종료한다.
- 제7조 ① 본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원기업과 자문단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널리 인정되는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지원기업과 자문단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자문단"

(서명 또는 인)

< 자문료 >

		, =				
분야	업무분야	서비스내용	유형 선택	금액 기재	분야별 지원한도 (만원)	기업당 지원한도 (만원)
	계약법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 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심화	지식재산권(IP) 보호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250	300
결 <u>국</u>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250	
	규제 준수 등	법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법규제 문제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등				
	노동법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일반	투자 및 자금 조달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100	
	기업법무 및 기타	창업기업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하며, 그 외 지원기업이 기업경영 및 고객관리 등에 필요한 법률 검토사항				
총액		-	-			

- * 창업기업이 신청한 "업무분야"에 맞추어 **"유형선택"란에 체크**해주시고, **금액란에 해당 액수를 기재** <u>다만, 우측 "분야별 지원한도"에 적힌 금액 이하로 기재</u>
- * 실제 업무내용과 다른 유형으로 선택 시 자문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주의

비밀유지협약서

<u>기업명 기재</u>(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와(과) 전문가(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 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지원기업과 전문가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 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 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②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석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 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 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아니한다.

-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라 조정 또는 해결한다.
 -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제12조(보칙) '지원기업'과 '전문가'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가" (서명 또는 인)

법률지원사업 자문의견서(지원기업·자문단용)

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원 기	대표자	주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성 명	소 속				
문 단	주 소	전 화 번 호				
		필요 시 자체적인 양식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갈음 가능*				
AI.	청내용	* 이 경우 별첨 몇번의 자료로 갈음한다고 반드시 본 란에 기재하고, 해당 별첨자				
끤	341 5	료의 파일명 및 파일 내용에 별첨 몇번이라고 표시 필요				
		(예시 : 별첨 1 사업소개자료, 별첨 2 관련 매출데이터 참조)				
		필요 시 자체적인 양식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갈음 가능*				
		* 이 경우 별첨 몇번의 자료로 갈음한다고 반드시 본 란에 기재하고, 해당 별첨자				
		료의 파일명 및 파일 내용에 별첨 몇번이라고 표시 필요				
자	문내용	(예시 : 별첨 1 의견서, 별첨 2 관련 판례 참조)				
		※ 의견서에는 ①질의사항, ② 사실관계 등 자문의 검토가 되는 전제사실, ③ 관련규				
		정, 계약의 내용, 판례, 유권해석 등 법적 근거, ④ 법률적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설				
		명사항, ⑤ 결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구ㅂ	l서류					
자문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20 년 월 일

(예시) 법률자문 추가 의견서, 계약서 정관 사본 등 법률자문 결과물

자문단: (서명 또는 인)

위 지원기업은 위 자문단과 체결한 법률자문 약정에 대하여 위의 내용(법률지원 사업 자문의견서)과 같이 자문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법률지원사업 참여신청서(자문단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4페이지 이내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변호사	시험종류	변호사자격 취득일		
자격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회	년 월 일 ※ 사법연수원()기		

소속	명칭	대표변호사	
법무	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	소재지	(본사 소재지)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제40조에서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경력					년 월 ~ 년 월
사항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판사, 검사, 법무법인 등 법조경력 위주로 기술

	기 간	전 공	학 위
전공 사항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공직	기관명	기간	업무 내용	비고
기관		년 월 ~ 년 월		
업무		년 월 ~ 년 월		
경력*		년 월 ~ 년 월		

^{*} 변호사 자격취득 후 공직 근무 경력(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단 판사, 검사 경력은 상기 경력사항에 기술)), 각종 위원회 등 활동 경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경력 등

	구분	내 용
		1. ('00.0월) 00허가 취소 관련 원고측 대리
	소송수행	
소송	(건)	
및		
자문		
실적*		1. ('00.0월) 00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법률자문	
	(건)	

* 최근 5년간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 관련 사건수임, 자문 등 법률실무 활동 기재(공고문 2,지원자격의 자격 요건에 준하는 활동 중심)

창업기업	기간	내용	비고
법률업무	년 월 ~ 년 월		
와 관련된	년 월 ~ 년 월		
활동*	년 월 ~ 년 월		

* 최근 5년간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활동, 강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 관련 기관 업무 참여 등 기재. 비고란에 연구활동 등 특징사항 적시

창업기업	
법률업무	
에 대한	
자문계획 또는	
또는	
추가역량	
기재	

* 분량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본인은 위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의 위원 공모에 따른 지원 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자문단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 창업진흥원)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에 Æ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공 대상	
○ 중소벤처기입	업부, 창업진흥원	
□ 수집·이용 등	목 적	
지원″ 사업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에 ㅏ 관련하여 법률 자문단 위원 선정 및 7 당지급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 · 이용할	항목	
– –	보(주민등록번호) 리(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 번호, e-mail, 계좌정보 등)
□ 보유· 이용기간		
○ 해당 개인정보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활동 관련 목적으로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하며 개인의 삭제요청 또는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에 참여기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2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식별정보	필수항목(성명, 소속,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창업진흥원장 귀중